

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3] <개정 2023. 4. 28.>

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

| 관세율표 번호 | | 품명 | 규격 등 | 세율 |
|------------|----|--|--|-----|
| 호 | 소호 | | | |
| 0303 | | 냉동어류[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(fillet)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] | | |
| 0303 | 6 | 브레그마세로티대(Bregmacerotidae)과 · 유클리티대(Euclichthyidae)과 · 가디대(Gadidae)과 · 마크로우리대(Macrouroidae)과 · 멜라노니대(Melanonidae)과 · 메르루치대(Merlucciidae)과 · 모리대(Moridae)과 · 무라에놀레피디대(Muraenolepididae)과의 어류. 다만, 제0303.91호부터 제0303.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(屑肉)은 제외한다. | | |
| 0303 | 67 | 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(Theragra chalcogramma)] | | 22% |
| 0303 | 69 | 기타 | 명태[테라그라 찰코그라마(Theragra chalcogramma)]는 제외한다] | 22% |
| 2710 | | 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한다],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 | | |

| | | | |
|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710 | 1 | <p>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하며,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</p> | |
| 2710 | 12 | <p>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</p> <p>4. 나프타</p> <p>5. 엔·지·엘(NGL)</p> | <p>0.5%</p> <p>0.5%</p> |
| 2710 | 20 | <p>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[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은 제외한다]</p> <p>1. 경질유(輕質油)와 조제품</p> <p>라. 나프타</p> <p>마. 엔·지·엘(NGL)</p> | <p>0.5%</p> <p>0.5%</p> |